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2. 26.(월) 14: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 (2016-73-34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가> OBS경인TV(주)의 OBS경인DTV방송국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붙임1>의 “자본금 확충” 조건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청문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제 70차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주)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OBS경인TV(주)의 OBS경인DTV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OBS경인TV(주) 일반현황 및 재허가 심사결과, <4> 주요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OBS경인TV(주) 청문 결과입니다. 먼저 청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문주재자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주셨고, 참석자로서 OBS 측에서 최동호 총괄본부장, 백정수 영안모자 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OBS경인TV(주)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 진술 내용입니다. 자금 확충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OBS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며, 필요시 OBS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 있고, ‘17년 필요한 약 30억원 중 9.5억원은 최대주주가 증자하고 20억원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18년 이후에는 단기대출, 담보제공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OBS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유입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관련해서는 백성학 회장의 지난 재허가 심사 시 ‘구조조정’ 발언은 인원감축이 아닌 통상적인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주재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가 구체이지 않아 최다액출자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국회 미방위 등의 건의서 및 경인지역 시청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기간 내에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허가의 지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

토의견입니다. OBS경인TV(주)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적채무를 이행하면서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OBS경인TV(주)에 대해 재허가를 하는 경우 3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핵심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도 OBS가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완전 자본잠식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계획 중 미이행금액인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는 청문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증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증자 예정 금액이라든지 대여 자금의 이자율·기간 등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다액출자자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지난 재허가 심사 때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례를 고려하면 자본금 확충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주제자 의견서, 국회·경인지역 지자체장·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OBS 종사자 등의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OBS에 대한 재허가를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과거와 같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OBS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재허가를 하되, 허가유효기간은 최단기간인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억원의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확충할 것(증자 시에 최다액출자자를 비롯한 주요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만일 실권주가 발생하면 제3자 배정 등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것), 이 조건에 대해서는 미이행 시 신속하게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의결주문에 명기하고 이 내용을 허가조건에도 첨부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 시 제출한 증자계획 및 경영위기 시 자금지원계획, 인력운용계획 등 OBS 경영 안정화를 위한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증자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제출할 것), 셋째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16년 재허가 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 주체별 방송계획"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입니다. 또한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한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을 동일하게 <붙임 1>과 같이 부가하고자 합니다. <7>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말까지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16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발간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미이행 시 신속하게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의결 주문에 명기하고 이를 허가조건에 첨부' 이 부분은 <붙임 1>의 재허가 조건 및 권고(안)에

있는 것처럼 재허가조건 안에 다시 별도의 표시를 해서 '동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여기에 저희의 의결주문 <나>를 그대로 기재해서 재허가 조건의 참고사항으로 같이 송부할 예정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BS는 정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오랜 동안 논의했고 고민했고 또 당사 사측과 면담도 하고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도 많은 토론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점 650점 이상이어야 통과되는데 631.87이기 때문에 재허가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의결안건에 들어 있지만 여러 지역시민단체 연대나 지역유지 인사들이나 또 국회 미방위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오셨습니다.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허가 거부를 하면 우선 당장 OBS 사원 240명의 일자리 일터가 없어지는 실직상태가 발생하고 그 지역의 유일한 민영 지상파방송사가 또 공백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시청자 권익 침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속대책은 현행 법제상으로는 굉장히 빈틈이 있어서 정책당국으로서는 제대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지만 향후 1년간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결안건>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만 결론은 내년 12월 말까지 이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법 절차를 거쳐서 재허가 거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OBS 당사 최대주주와 경영진과 사원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의견을 많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유지들과 시민단체연대들이 함께 정상화하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1년을 유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합의해서 의결하면 정말 정책당국 방통위도 최대한의 정책지원을 펴서 경인지역의 유일한 민영방송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화, 정상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인력운용계획도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구조조정, 인력감축, 정리해고, 다운사이징을 통한 경영 정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경인지역의 방송인들, 언론인들, 기자·PD들이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년의 기간을 더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허가를 취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먼저 심사를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부위원장님과 사무처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같더라도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증가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증가를 하지 못할 경우는 연말에 점검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허가 조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다시피 2013년도 재허가 당시 부과했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허가 때 새롭게 부과한 조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콘텐츠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지요. OBS 대주주가 명확히 경영개선에 대한, 즉 심사위원들과 청문위원들이 확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심사위원님과 청문위원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경영개선 방안은 내놓지 못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붙임>자료로 'OBS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결의' 이것이 이사회 결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사회는 주요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내용을 보면 '최다주주는 추가 증자하기로 노력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주요주주들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역의 방법으로 경영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 하면 최다주주도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자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분담해야 할 주요주주 또한 증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즉, 최다주주와 주요주주 모두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영개선 방안을 일절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재허가 조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재허가 불허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그리고 법적 장치가 없다는 그러한 현실론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전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주주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배 짜라는 식으로 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 넘기고 OBS가 지금 이렇게 경영이 부실하게 된 것을 방통위 탓으로,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특별히 이렇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큼니다. 무엇보다도 최다주주와 사업자들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원 등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들이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다주주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

에서 이렇게 조건부 재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니다. 이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고민, 그리고 사무처의 고민들을 심분 이해하지만 참 방통위원으로서도 뾰족하게 지금 어떠한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현실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먼저 조건부로 재허가가 나게 되어서 일단 지역방송사의 폐업을 하지 않게 됐다는 점, 또 큰 혼란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한, 또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미방위 건의문 내용을 보면 물론 야당 위원들의 서명을 거쳐서 나왔습니다만 OBS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240여명의 종사자들의 실직 그리고 1,500만명 경인·인천 지역민들의 시청권 소멸로 확대된다는 우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방송사의 존립 목적과 수많은 종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최우선적 판단기준으로 해서 우리 방통위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충분히 존중한 그런 사무처 의견대로 조건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꼭 다행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건의서에 보면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재허가 때보다 더 강한 이행조건과 실행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보기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3년 재허가 조건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더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금액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고의무에서 그동안 증가하고 나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증가 상황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는 강화하고, 30억 원 부분도 기존에 비해서 동일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증가라든지 실권주 배분에 있어서 제3자 참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OBS 재허가를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더 준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사업자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역민들의 시청권,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공적 기능, 이것을 여기에서 폐업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 시청권의 보호, 또 240여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방송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과 의지 그런 여러 가지 바람을 담아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재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한 조건이 따랐습니다만 무리하게 우리가 재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일단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 정책의지를 충분히 밝히고 개인 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번에 부과된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재허가 거부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이행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증자 관련해서는 3개월마다 진행계획서를 허가조건에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3개월 분기마다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이행기간은 연말이긴 하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보고를 받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 독촉해서 어떻게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방송을 살려내는 일이 더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허가 조건 중에 보면 자본금 확충이 가장 큰 하나의 조건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이행할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광고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수익모델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그 돈을 어디에서 자본금을 확충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비전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자본금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는 최다액출자자가 이야기했듯이 일부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구두 약속을 한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의향을 의견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각서를 받든가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는 인력감축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줘서 우리가 줘서 반드시 그런 실천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심어주고 방송을 꼭 좀 살려 내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혹시 OBS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그것은 자본금 확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것은 현물자산에서 현금자산으로 자산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일 뿐이지 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자본금 확충과 연결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자본금 확충은 순수하게 주주 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 실권주가 발생하면 제3자가 새로운 자금을 더 집어넣는 것만이 자본금 확충인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문주채자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최대액출자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나 우리 사무처의 의견이나 동일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미방위 등의 건의서 및 경인지역 시청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재허가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의견이라고 첨부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방위 위원들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혹시 인천지역 의원님들 중에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인천지역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자체장에서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OBS를 통해서 경인도지사과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경인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건의서가 들어보면 그것을 심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건의서는 실제로 100% 원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심사를 진행했으니까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건의서를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6페이지 맨 밑에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향후 계획이 OBS경인TV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6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재허가 백서 발간 앞에 '2016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위에 서부터 해당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에 지난번 제70차 회의 때 포함해서 전부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오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중에 OBS경인TV 건에 관해서 한번 검토의견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7>번 향후 계획에서 전체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앞으로 활동을 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처음부터 사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지상파방송사업자라는 말이 위에서 부터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다른 데도 아직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꺼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사업자들 도….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국장님은 알아들으셨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 그다음에 안건에 담어져 있는 내용을 중

합해서 정리해 보면 엄격하게 저희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재허가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선 무엇보다도 OBS가 그 지역의 유일한 민영 지상파TV방송이고 그다음에 지역성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른 지역민방과는 달리 100% 자체 편성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법상 허가·재허가를 내줄 때 가장 짧은 허가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재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1년으로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허가 조건 <1>번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라고 하고 그때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 그때 가서 남는 재허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다시 말하면 유효기간이 1년짜리 재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것을 미리 의결해 놓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봐야 할 것은 종전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미리 의결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미리 저희가 해 놓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재허가 내용이 해당 방송사에 정확하게 알려져서 해당 방송사도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이 재허가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다액

출자자 주주들부터 종사원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방송을 살린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 힘을 모아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끝으로 하나 강조해 둘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OBS 재허가 여부에 대해서 국회 미방위원들과 시민단체와 그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여러 깊은 우려를 전해 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역시 OBS의 주요주주들과 그 경영책임자들이지요? 지난 12월 23일 재허가 거부로 가는 마지막 절차 청문을 앞두고 OBS의 이사회가 결의한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 이 의결안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2월 21일자입니다. “OBS 이사회는 OBS의 새로운 발전과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 최대주주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 증자하기로 노력하고,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은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사장과 그리고 5명의 주요이사들이 이름을 명기하고 사인했습니다. 이 OBS 이사회 특별결의가 향후에 OBS의 정상화에 책임 있는 그런 문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결국은 주변의 어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보다도 당사자들의 자구책, 자구노력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매 3개월마다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년 뒤에 딱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기보다 중간중간 매 3개월마다 점검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읽으신 특별결의는 특별결의대로 100% 이행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재허가 조건을 충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뜻도 OBS에 분명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페이지인데 청문 과정에서 OBS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최다주주와 그다음에 대표이사 대행이 출석했던 것이지요. 여기 중간쯤 보면 '최다액 출자자는 청문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하고' 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최다주주는 당연히 자신의 지분한도, 즉 지상파방송의 1인 최다 지분인 40%,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본인은 9.5억원 정도 가능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으로 보면 1대 주주인 영안모자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보면 9억 5,000만원 증거하면 자기들 법적 의무는 다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감자 후 증거를 하든, 아니면 주요주주들의 증거를 이끌어내든 이것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30억원을 다 증거해야 그것이 허가조건의 이행으로 보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지금 논의하신 것은 이 재허가 조건의 의미라든지 또는 앞으로 OBS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꼭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73-345)

다. (주)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73-34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의결사항 다> ‘(주)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오늘 피심인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결안건 <나>와 <다>에 대해서 함께 안건 보고를 받고 의견진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은 각 안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위법성 판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첫 번째 알림톡 서비스 관련입니다. 의결주문은 “(주)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지난 5월 서울YMCA와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이 카카오가 이용자로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가입 의사를 확인받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를 해서 사실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조사대상은 카카오가 ‘15년 9월 22일부터 ‘16년 7월 31일까지에 발송한 ‘알림톡’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카카오톡 앱 설치 안내화면’에서 ‘친구, 동료, 가족들과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 채팅을 즐길 수 있는 무료 메신저 서비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림톡’은 기존의 문자서비스 방식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로서, ‘15년 9월 22일 출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로, 택배회사 등이 배송 등의 정보를 별도 사전 카카오톡 친구 추가 없이 전송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안내를 하였으며,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3,160여개 기업과 거래 중이고, 조사대상기간 중에 총 3억 7,500만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였으며,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장의 0.4%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 카카오는 ‘15년 9월 22일 출시부터 ‘알림톡’ 수신화면의 우측 상단에 ‘알림톡 차단’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년 4월 28일 안내문구의 변경

전까지는 가입자 의사 확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금년 4월 28일부터 “SMS 등 발신자가 정한 다른 방식으로 수신을 원하시면 우상단 ‘알림톡 차단’을 눌러 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다만 변경 전이나 변경 후 모두 청색 바탕에 다소 짙은 청색 글씨이고, 글자크기는 본문 메시지 대비 60% 수준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관련해서 ‘알림톡’은 수신만 되더라도 9.3~23KB의 데이터가 차감되고, 그 내용을 열람할 경우에는 총 82~130KB의 데이터가 차감되어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15년 9월 22일 ‘알림톡’ 서비스 출시부터 금년 3월 21일까지 알림톡 수신 및 내용 열람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다가 금년 3월 21일 약관을 개정해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이후 4월 28일 수신화면의 안내문구를 변경하면서 “와이파이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접속시 수신 중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새로이 삽입하였으며, 다만, 변경 전이나 변경 후 모두 청색 바탕에 다소 짙은 청색 글씨이고, 글자크기는 본문 메시지 대비 60% 수준입니다. 위법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입자 의사 확인과 관련해서 ‘카카오톡’과 ‘알림톡’은 모두 ‘카카오톡’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카카오톡’은 친구, 동료, 가족간 채팅서비스인 반면에 ‘알림톡’은 영리 목적의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발송 주체, 메시지 내용 등 그 기능 및 성격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림톡’은 ‘카카오톡’의 추가적인 이용에 해당되며, ‘카카오톡’ 가입자는 자신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가족, 친구, 지인과의 채팅만을 원하거나, ‘알림톡’의 특성 등을 알리고 추가적인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나, 작년 9월 22일 서비스 출시 이후 금년 4월 28일 수신화면의 안내문구 변경 전까지는 ‘알림톡’의 발송 및 차단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지 아니한 것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년 4월 28일 수신화면의 안내문구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알림톡’ 수신자가 수신화면의 안내문구를 숙지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입자 의사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작년 9월 22일부터 금년 4월 28일 기간 중에 카카오가 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나목 2)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 ‘알림톡’ 수신 및 내용열람으로 데이터가 차감되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알림톡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가입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무선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가 차감됨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무료로 수신되는 문자서비스 방식의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는 수신자에게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기가 어려우므로 ‘알림톡’ 서비스 이용여부 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서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하나, 작년 9월 22일부터 금년 3월 21일 이용약관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이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 수신 ‘알림톡’ 수신화면의 안내문구를 변경하기 전까지 요금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없었으며, 4월 28일부터 안내문구를 통해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수신자가 안내문구를 숙지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한 사실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9월 22일부터 금년 4월 28일까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나목 4)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 URL 수집·이용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주)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6월 2일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카카오의 URL 미리보기 서비스 및 다음 검색서비스 관련 중요한 사항 고지 여부가 되겠고,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친구, 동료, 가족들과 실시간 그룹채팅 및 1:1 채팅을 즐길 수 있는 무료 메신저 서비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작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수신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한 URL을 수집하고, 수집한 URL을 통해 해당 웹 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하여 수신자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보여주는 ‘URL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25일부터는 URL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URL 300만건을 자사의 포털인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하다가,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에 걸쳐 삭제해서 이미 수집한 URL이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카카오가 작년 6월 16일부터 ‘URL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특히 금년 1월 25일부터 6월 3일 이전까지 ‘URL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내용이 이용약관이나 카카오톡 앱 설치 안내화면에 없고, 또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카카오가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이용자가 안다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URL을 주고 받지 아니하는 등 카카오톡을 다르게 이용하였을 것이므로 URL 수집·이용은 카카오톡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카카오는 URL 수집·이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나목 4)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림톡 사건 9페이지에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한편, 3월 21일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음에도 4월 28일 변경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막대기를 긋고, 막대기라는 것은 앞의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에 동그라미 옆에 있는 것은 “3월 21일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음에도 4월 28일 ‘알림톡’ 수신 화면의 안내문구를 변경하기 전까지 수신화면의 안내문구에 데이터 요금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없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작대기는 4월 28일부터 또 이후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동그라미로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사무처에 묻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는 몇 차례에 걸쳐 했고, 또 피심인 측에 준비 기일을 제공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의견도 청취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피심인 측에서 이렇게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11월 14일 사무처에서 시정조치(안) 보내서 의견수렴한 것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오늘 상정한 내용이 11월 14일 당시 시정조치(안)과 위법성 판단 부분이나 이런 내용이 달라지거나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은 오늘 와서 의견 진술하겠다는 내용이 11월 14일 시정조치(안)에 관한 피심인 측 의견을 진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검토 끝에 오늘 올린 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의견 진술은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번 여쭙 보고 싶은 것이….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준비 기일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의견을 들은 것은 물론 공개된 상황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나의 정식 절차인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이 안건이 확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날 논의된 것 중에 피

심인이 주장했던 내용 중 저희가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 그대로 위법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만약에 위법성...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처에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드리는데 피심인 측에서 오늘 진술을 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기일 때 의견 진술했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 최대한 준비기일 동안에 토론된 내용을 다 감안해서 사무처에서 오늘 상정한 안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박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대기실에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회의는 피심인 측과 반복된 토론이 안 되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은 숙지를 했고 저 나름대로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그렇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해서 통보했던 시정 조치(안)와 일부분 저희들은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치(안) 중에서 시정명령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진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약간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카카오 측에서 기본적으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조금 저희 사무처와 의견을 혹시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달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그 준비기일 중에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수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의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동일한 논의가 또 반복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 의견 진술하러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시정조치(안) 보낼 때 과징금 부과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가 된다는 것은 통보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거기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까지만 통보되어 있고 과징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는, 아까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이것 하나만 정리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톡 서비스나 미리보기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 서비스를 토대로 해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새로운 서비스로서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2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또는 시행령의 규정을 엄격한 잣대로 사용해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닌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전혀 아닌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는 부분은 2건 다 비슷한데 유일하게 그런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새로운 서비스는 적극 권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약관을 통해서 미리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달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이용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것에 한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이고, 다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서비스라는 내용을 알리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측 관계자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의견진술인 입장)

네 분 오셨습니까? 이병선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강 성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강 성 (주)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광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류광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박정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박정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밖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건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림톡 서비스나 또는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류광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제가 간단히...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기일에 제 기억에는 박 변호사님만 안 계시고 세 분은 다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장하신 내용 중에 또 일부는 저희가 수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되어 있는 안건을 토대로 해서 종전 처음 안건이 아니고 이 수정된 안건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심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선 부사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저희 회사로서 이런 위원회 심결에 올라온 것이 처음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먼저 진술을 해야 할지 조금 당황되긴 합니다만 아까 대기실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이번 건이 저희가 카톡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그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냐를 명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뜻이고 또한 방통위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쟁점이 되었던 소위 사전동의 부분, 이 부분들이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의 동의절차로서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으로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하고 또 그 취지를 최대한 받들어서 저희가 알림톡에 관한 최초 메시지에서 알림톡이 어떤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는 안내문구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옵트아웃(Opt-out)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때 알림톡 서비스가 카카오톡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요사항으로서 또 공지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서비스가 더욱 더 이용자와 기업 모두 사이트에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의결해 주신다면 이용자 권리 부분들, 또 이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의 진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사로서는 더욱 더 고려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중간에 말씀드리면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

림톡에 관해서는 '알림톡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거부했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그 부분도 명확하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URL에 대해서...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URL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받아보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명확히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URL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 이 부분을 이용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것을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서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조치를 취하고 또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URL 미리보기 서비스'라는 것도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카카오톡 속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니만큼 그 부분들이 이용자가 명확히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만 강구해서 이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준비기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시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른 SNS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의 URL 수집·이용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수집·이용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용자들로서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카카오톡에 첨부해서 보냈던 URL을 누군가가 그것을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한다, 또는 계속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즉각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지면, 그러면 이용자들로서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카카오톡이 서비스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가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취지가 안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 추가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것...

○ 류광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저희가 바뀐 시정조치(안)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로 출석해서 바뀐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의견을 따로 준비는 못했고 큰 부분은 지난번에 준비기일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느 분이 답해도 좋습니다. 우리 방통위가 관장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위치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카카오는 그 3개 법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3개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이고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사업자 내지는 위치기반사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맞겠지요. 그런데 아까 부사장님이 처음으로 방통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심결장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 알림특이나 URL을 수집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강학상 내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인터넷 기업이다', 아니면 '모바일 사업자' 아니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 이래서 오늘은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은 논외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들이 오픈할 때 법적 검토 그다음에 개인정보 영향검토 이런 철저한 리뷰를 거쳐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림특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준비기일 때 여러 번 저희의 이 법 법률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이 정보성 메시지이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카카오톡 서비스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전동의, 특히 옵트인(Opt-in) 방식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저희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다만, 그 가독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법률대리인께서 의견 진술하시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 준비기일 때 한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때 진술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강조해 드리면 저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통신시장이나 인터넷 모바일 시장 다 공히 통틀어서 봤을 때 아주 소규모로 스타트업 위주로 영세하게 시작했지만 오늘의 통신시장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모바일 다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나 사업 기반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하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여기에 대한 막중한 미션을 갖고 있는 방통위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입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는지 또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충실히 고지했는지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던 통신사업자들은 특히 그것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쟁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비기일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나, 아니면 이용자 의사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느냐 그런 데 대한 법률적 아니면 실제 서비스상 다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는 아주 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제반규정, 특히 이용자보호나 공정경쟁을 규율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면 방통위가 그러한 현행 규정들을 무조건 엄격하게 적용을 꼭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자꾸 나와서 기존의 사업자와 경쟁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대체적인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이용자들의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러면서 저는 아주 선순환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방통위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사무처에서 오늘 보고한 가입자, 이용자의 의사확인이 미흡했다, 물론 구간을 보면 의사를 확인 안 한 경우가 있고 확인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 URL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독성이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조사기간 중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단지 가독성만 미흡한 것이 아니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도 불충분했다, 비용 부담이 된다, 아니면 당신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도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가독성도 높이는 그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 저희가 구분해서 처리하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의미를 잘 살피서 앞으로 카카오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 의무 내지는 이용자 보호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추가 의견이 있으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톡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28일까지는 이용약관이나 카카오톡 설치화면이나 또는 수신화면 안내문구에 소위 알림톡을 차단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것만 있었지 그 알림톡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가 없었지 않습니까?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서도 알림톡 쓰면 데이터 차감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28일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수신화면 안내문구로 하셨지만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URL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보기 서비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서비스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된 위법한 행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알림톡의 경우에는 수신화면 안내문구를 다시 개선해서 데이터 차감부터 그다음에 알림톡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설명하고 게시지만 그 부분은 안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의견 더 진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쟁점은 2가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동의와 중요사항 고지, 그 위반 여부지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큰 틀에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은 아마 다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서비스 내지는 기능이 추가된 서비스의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면 크게는 쟁점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이 2가지 사안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술 환경의 변화 추세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타 유사한 서비스와의 법적인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법 위반일 때 과연 제재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한 제재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

스가 아예 제공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과 카카오톡 쪽의 입장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아까 이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었지만 두 쟁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회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저희가 밖에서 들은 취지로는 2016년 올해 4월 여러 가지 개선 문구를 넣기 전까지에 대해서 새로운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단 저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이미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정보성 메시지를 받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다만 저희들이 다량으로 이용자에게 발송하고자 원하는 기업들의 발송 편의를 덜어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은 것이지,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디까지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냐, 이용자에게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냐를 판단한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것으로 정보성 메시지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이용자들에게 이용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기준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이용자들에게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그런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설사 저희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받거나 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위법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카카오톡이 전 국민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후생을 주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중요한 사항을 철저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리해 보면 법을 위반할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거나, 어쨌든 법 위반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것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알림톡' 내지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 사전동의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차감 같은 중요사항 미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 중에서 특정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카카오톡 쪽에서는 '왜 우리만 문제 삼지?' 이런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일단 데이터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메신저 서비스들이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모바일로 들어오게 되는 이메일이나 모든 알림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량의 데이터는 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메신저만 따로 놓고 저희가 데이터 소진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이용자들이 정말 이 서비스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날아오면서 데이터가 소진되니까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모두 다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에서는 전부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도착하는 것은 공통된 기본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첫 회에 데이터가 몇 KB 소진되는 것은 메신저 서비스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점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서비스나 다른 메신저보다 특별히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나 그렇게 운영해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덧붙여서 아까 기업 메시징 시장으로 알림톡을 분류하셨는데 그 분류에 따르더라도 지금 통신사들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기업 메시징 시장의 경우에도

‘사전동의’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과 형평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리즘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특히 위법하다는 그런 판단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자세히 물어본 이유가 이것이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용자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법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용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사항, 이렇게 데이터 차감이라든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사업자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자들의 신규서비스 개발, 혁신 노력 이것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용자 권익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의 침해 정도가 그렇게 과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들의 혁신 노력, 그리고 신규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된다면 그것을 비교해서 법 위반의 정도도 우리가 참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사한 서비스를 특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앱 형태로 제공되는 여러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핵심적인 서비스에 여타의 다른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이용자의 동의를 모두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서비스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추가 내지는 새로운 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직은 그 기준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금 용어상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기존 서비스 연장이건 새로운 서비스건 개념 정의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전동의’라는 말씀을 고 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측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히 알리즘 서비스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준비기일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옵트아웃(Opt-out) 서비스로 해도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옵트아웃(Opt-out)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알려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강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사전동의를 아닌 옵트인(Opt-in)이 아닌 옵트아웃(Opt-out)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서비스의 발달이라든지 그것이 추가 서비스건 서비스의 확장이건 간에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주는

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2가지 '알림톡'과 'URL 미리보기' 두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우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대하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위원님들이 참작하셔서 여러 차례 의견진술을 주셨을 때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그쪽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편의만 제공한다고 해서 편익을 도모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다, 얼마든지 기술발전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또 계속 개발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그런 산업 발전에 우리 법령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행정규제도 계속 철폐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기업을 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한 부분을 우리가 위법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혹시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문자서비스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시려면 차단해도 좋습니다'라고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순간 많은 가입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관청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마지못해서 아주 정말 가독성이 거의 두드러지지 않게끔, 또 이것도 역시 보는 '이용자들이 또 빠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업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톡만큼 전 국민이 애용하는 그런 서비스 같으면 좀 더 투명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자들도 아주 극소량의 데이터가 소진되고 차감되고, 또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데이터 차감도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이제는 이렇게 뒤로 자꾸 숨길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답게 정말 글로벌기업으로 거듭 났으면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법을 지켜야지요. 위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룰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몇 차례입니까? 의견진술하신 지가 세 차례이지요?

○ 강 성 ㈜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제는 그 발언은 거두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해 나가겠다’ 그렇게 나오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혹시 그런 안이한 인식은 아니시지요? 부사장님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서 당당하게 사업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끝이 될지 모르겠는데 알리즘 개선방안을 보면 옵트아웃(Opt-out)으로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방통위 내에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 위법한 것이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새로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것은 이용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업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업계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책당국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토론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통위원님들 전원이 카카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사업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짐을 부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옵트아웃(Opt-out)이면 가입자 회원모집 하기가 쉽고 옵트인(Opt-in)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방통위 내부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규제를 하지 말자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국내 가입자들만 상대로 하지 말고 국제 경쟁력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텔레그램(Telegram)이나 바이버(Viber)처럼 보안성과 통신비밀보호를 무기로 그것을 수단으로 가입자도 늘리고 회원도 늘려야지 ‘법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업하기 어렵다’, ‘너무 엄격하게 곤란하다’ 이것은 발전방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세계적인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관대하게 정말 제재수위를 낮춰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보안성과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가입자를 늘리고 회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매우 관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하려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피심인 측에서 강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요약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그리고 기업형 메시징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무처에서는 그것이 해당된다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성격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서비스에 해당되고, 또 기업형 메시징 서비스라고 판단하면 바로 디폴트로 따라오는 것이 '사전동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것이 사전동의다, 사후동의다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정조치에 있어서도 이용자를 위해서 업무개선도 하지만 또 명확하게 의사확인이 안 됐거나 고지가 전혀 안 됐던 기간과 또 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된 기간을 구분해서 과징금 부과 문제도 구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김재홍 부위원장 퇴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 두 가지 규정을 이번에 카카오의 두 가지 사건인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 방통위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맞게 이 제도도 보완해야겠지만 제도가 항상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이것을 이용자를 위해서 내지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목적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아까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사항 자체가 상당히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의견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잘 아시겠지만 피심인들의 의견도 우리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있다가 위법성의 판단 여부를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카카오 쪽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위법성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서 이용자 권익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막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쪽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규제 일변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자

제가 예를 들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안건을 우리가 처음 접하고 또 조사·제재하는 과정까지 오는 것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이병선 (주)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알림톡이나 URL 수집·이용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주도적으로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 왔고, 국민신문고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조사대상에 올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쪽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편리를 주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됐든 서비스 개선이 됐든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만,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자의 시각과 또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해야 하는 저희 시각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견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편리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이것은 안 쓰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카카오가 기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명확히 알리고 그리고 이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문구 개선과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강 성 (주)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알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사무처와 상의해서 기왕 개선하는 김에 안내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 성 (주)카카오 법무총괄 부사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말씀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카카오 의견진술인 퇴장)

아까 말씀하셨던 위법성을 전제로 해서 의결안건 <나>와 <다>에 대해서 박노익 이용자정

책국장님은 시정조치(안)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알림톡 관련해서 시정명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년 4월 28일 이전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등에 따라서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기준금액은 '알림톡'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고, 이용자 피해가 경미하며, 기술발전으로 출현된 신규방식의 서비스로서 초기단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2억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반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20%를 필수적 가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10%를 필수적 감경하며, 그다음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되었으므로 10%를 추가적 가중하고, 추가적 감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URL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년 1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등에 따라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기준금액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이용자 피해가 미미한 점,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자사 검색서비스 연동을 중단하고 URL을 삭제한 점, 검색서비스의 결과 향상을 위한 기술적 시도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억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URL을 수집하여 자사 검색서비스에 연동한 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므로 10%를 필수적 가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0%를 필수적 감경하여 최종 1억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2건 모두 다 시정명령 부분에 '금지행위의 중지'가 있는데 지금 2건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알림톡의 경우에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문구가 안내는 미흡하지만 안내문구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URL 다음 검색서비스' 연동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3일 이후에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면 금지행위 중지는 어떤 내용이 금지행위의 중지로 들어갑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통상적으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때 비록 과거의 것이지만, 물론 대부분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직후에 보통 시정조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위반행위 그 자체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중지를 명령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취지라면 알겠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편의상 알림특과 URL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지요. 우선 알림특의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제재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도 제가 이 안건을 계속 논의하면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과징금의 규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전히 기준금액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안건 처리하는 데에 제가 반대 의견을 표하지는 않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정조치(안)이나 과징금 부과(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업무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도 많이 토론이 됐고 오늘도 많이 됐는데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이후에 사무처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와 피심인 측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위원들과 공유할 것인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오늘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꼭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업무처리 절차 개선의 문구가 확정되면 그것이 심의·의결서에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 최성준 위원장

- 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RL 관련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징금이 약간 제재 수준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만 기록해 놓고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안건 <나>와 <다>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73-34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식회사 쏘카, 아시아문화원, 주식회사 타바, 주식회사 하나씨티피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 제5호에 따라 금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쪽의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쏘카, 아시아문화원, 타바, 하나씨티피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그다음에 주식회사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5쪽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허가심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 중 맨 밑에 11월 14일, 1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시장확정(안)입니다. 두 번째, 개별 시장별 확정(안)에서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시장을 별도로 확정하여 디지털 시장과 분리하였으며, 지리적 시장은 현재와 같이 두 시장 모두 SO 구역별로 확정함을 유지하였습니다. 방송광고시장은 단일 시장으로 변경 확정하였으며, 그리고 여타 시장은 현 시장확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5년 방송시장 개관입니다. 작년 한해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성장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시장경쟁은 강화되었습니다. 후발사업자의 성장으로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집중도, PP의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집중도, 방송광고시장 집중도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요집중도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SO는 침체, IPTV는 성장 지속 그다음에 VOD 및 OTT 성장세 지속 전망, 홈쇼핑 PP의 침체, 채널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광고매출액 규모 일시적 증가, 프로그램 판매 매출의 증가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별 주요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의 <나> 평가결과는 아날로그 가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장집중도는 감소 추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8VSB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요금수준은 SO는 하락, IPTV는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에서 SO는 하락, IPTV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은 복점구역의 집중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방송채널 거래시장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체 시장집중도가 완화되었으며, 두 번째로 유료방송채널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상파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본 시장은 지상파 방송3사별로 재송신권 시장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플랫폼과 지상파 측 협상력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모두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주기적인 관련 시장획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체 시장의 수요집중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방송광고 시장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지상파3사 점유율 하락, CJ계열의 점유율 상승, 종편4사계열의 점유율 상승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완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편의상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보고할 수 없어서 주로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쟁상황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뒤에 계신 기자 분들에게 배포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여러 곳에 보내드리기도 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면 기자실에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4페이지에 간략하게 시장획정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광고시장을 기존의 지상파와 유료방송 광고시장으로 분리했는데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통합한 이유나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방송경쟁상황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장획정에 대한 것을 먼저 논의했었는데 연구한 기관에서 볼 때 판매방식 및 광고단가 그다음에 시청시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요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단일시장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수요대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고시장에서의 규제정책은 지상파와 비지상파 차별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간광고이지 않습니까? 제도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상황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차별규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별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차별규제지요. 왜냐하면 중간광고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광고매출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중간광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료방송은 패키지로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광고판매단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확정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시장확정을 해서 시장경쟁상황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시장확정을 통해서 경쟁의 진척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 규제정책의 준거로 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난 과거의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본 의도는 뭐냐 하면 결국 시장확정을 하고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정비입니다. 제가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까지 사전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광고제도 자체가 방송사업자들의 핵심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워크숍 할 때도 이것이 한번 지적됐던 것 같은데 유료방송시장에서 8VSB를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가입자 수 감

소 그다음에 디지털 증가 이 속에서 8VSB를 어디로 분류한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것이 명확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붙임> 참조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에 시장들 주요평가 결과이면서 첫 번째 유료방송시장, 그래서 시장 개요를 나타낼 때 개념으로 '아날로그 유료방송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분리·획정함'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밑에 당구장 보시면 '8VSB 상품은 경제적 거래관계상으로는 아날로그 시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술방식에 따라서는 디지털 시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8VSB에서는 2가지 시장 모두에 포함해서 시장경쟁상황을 이번에는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쪽 시장에 다 넣어서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중간단계 8VSB 그리고 디지털로 갑니다. 풀 디지털로 양방향성을 갖춘 디지털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지만 8VSB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관점과 시장에서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상황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획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유의미하다면 구분해서 시장획정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무의미하다면 통합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총괄했던 KISDI의 박동욱 실장님, 실장님의 소신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를 수행했던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디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의 기술방식인 8VSB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화질로 내보내느냐, 그다음에 양방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8VSB를 디지털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상 이것을 디지털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부의 디지털 전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VSB를 디지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상황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품의 경제적인 속성 그다음에 다른 상품과의 경쟁적인 관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아날로그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획정할 때는 저희가 아날로그 상품으로 경제적인 특성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여러 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디지털 전환 이런 지표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획정을 통해서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정책 목적상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지를 유지하면서 8VSB가 아날로그에 속했을 때 아니면 디지털로 속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양자택일하라면 어느 시장으로 보내야 합니까?

○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저희도 시장획정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서비스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8VSB를 아날로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15년도에 연도를 평가한 것이고, '15년도에 평가했을 때 8VSB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상품과 요금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상품과 요금도 같이 했어야 됐고, 채널 구성도 거의 같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VSB가 사실 유료방송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품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도 그렇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또 내년이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처럼 인위적인 그 해에 딱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장이 변동되는 상황을 반영할 것입니다. '15년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은 아날로그 상품의 시장획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실장님 설명이 제 입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말씀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책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즉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8VSB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이용자 보호의 관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여전히 아날로그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분류해 버리면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VSB 가입자는 좋은 화질과 음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타 양방향서비스나 그와 연동해서 보다 나은 이른바 스마트 서비스라든가 유비쿼터스 서비스, AI 등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ISDI 연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말씀드렸을 것이니까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볼 때, 아니면 저희 국에서 볼 때 경쟁상황평가를 경제적 거래의 관계 의미상에서의 시장획정으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부처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술적 방식으로서의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획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도 물론 경제적 거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8VSB는 아날로그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부 위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의 하나라고 제공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번에 충분한 시장획정을 할 때 경제적으로만 볼 것인지, 다른 기술적 방식을 고려해서 시장획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 시장에 넣어서 양 시장의 경제상황으로 평가하고, 앞에 시장획정을 할 때 저번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내년 초부터 시장획정 논의를 새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획정방안을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시장획정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날로그로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디지털로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양쪽 시장의 경제상황을 파악한 정도로만 봐주면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경쟁상황평가의 시장획정과 그다음에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VSB를 디지털 전환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당연히 8VSB가 중간에 과도기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루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상황평가에서는 또 경쟁상황평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2016년 경쟁상황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획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 과장님께 물어보았는데 여기 평가 개요의 목적에 '방송시장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방송법 제35조의5를 보니까 여기는 주로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과 경쟁상황평가방법·기준에 관한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방송시장 현황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김성규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 활용이나 근거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면서 이 자료가 이러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써 놓은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박 실장님!

○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기본법에 있습니다. 방송통신방송발전기본법...

○ **이기주 상임위원**

-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제시고 다른 분이 규정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고안건에 대해서 무엇을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2011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적인 일이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앞

으로 계속 보완·발전하자,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방통위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와 KISDI와 경쟁상황평가위원회 3자 간에 경쟁상황평가를 실제로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죄송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 못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경쟁상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방송기반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KISDI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방송기반국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한 계획에 대해서 KISDI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1차 만들면 그것을 방송기반국에서 받아서 같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를 거쳐서 의견이 어떤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을 전체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절차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이것이 우선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국장, 과장이 이런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가야 하고 저렇게 가야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경쟁상황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질문도 안 했습니다. 박 실장님, 여기 앉아계십시오. 제 이야기는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 자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페이퍼워크를 하든 조사·분석을 하든 이런 것들은 KISDI의 연구원들이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실상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전체회의에서도 8VSB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의견이 맞지 않듯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상황평가위원회나 또는 그전에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시장확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것, 그것은 기반국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의견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분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적에 방송시장 현황이라는 말이 방송산업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 경쟁상황 평가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규제 내지는 경쟁정책에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반영되고 아니면 미흡하다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이런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5페이지에 '방송시장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규모 확대, 성장 속도 둔화, 경쟁은 강화 그다음에 SO 침체 이렇게 쪽 나오는데 제 이야기는 이것이 경쟁상황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내용과 그것을 토대로 경쟁상황이 어떠한 지에 대한 분석하는 내용이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후자가 훨씬 더 중시되고 부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5페이지, 6페이지의 정리가 이 보고서 목적에 부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료방송시장만 보더라도 시장 개요 그다음에 평가결과 및 시사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기에서 시행령을 보니까 방송법 시행령 제23조에 경쟁상황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이 나오는데 거기 제2항에 보면 경쟁상황을 평가할 경우에는 아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구조, 진입장벽이나 경쟁사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체서비스 내지는 사업자 처닝(churning)이지요. 처닝(churning)의 용이성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의 성과로서 요금, 품질 수준은 어떤지, 기술 혁신의 정도 이런 것들이 쪽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는 시장의 일반적인 실태에 관해 이야기하고 경쟁상황에 관한 평가결과와는 구분되어서 후자가 클로즈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부,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방송시장, 통신시장 또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서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서베이에 관한 결과는 주기를 맞추든지 조사하는 주체를 통일시키든지 해서 그것은 공통으로 활용하고, 지금 경쟁상황평가를 담당하는 주체들은 주로 1차적인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깊이 있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이 평가 개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미래부든 방통위든 방송시장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경쟁상황, 경쟁정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미흡한 것은 없는지, 보완할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쟁상황평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또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경쟁상황평가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올해 평가도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공표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경쟁상황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내용, 또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일부 뽑아서 다시 한 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2016년도 대면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사무처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저희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면서 보도해 주신 뒤에 계신 기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